

# 심사보고서

(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안건명	페이지
1. <u>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u>	1
2. <u>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u>	4
3. <u>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u>	8
4. <u>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u>	11
5. <u>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u>	14
6. <u>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u>	18
7. <u>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21
8. <u>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24
9. <u>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31
10. <u>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37
11. <u>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41
12. <u>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47
13. <u>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53

안 건 명	페이지
14. <u>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62
15. <u>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u>	68
16. <u>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71
17. <u>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74
18. <u>「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u>	77
19. <u>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79
20.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82
21. <u>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85
22. <u>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u>	8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1. 18.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1. 28.)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김광현】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을 공개모집·선정하고, 마포구의회에 위촉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가나다 순)

연번	성명(성별)	연령	주요경력 등
1	임용호 (남)	69세	· 서울시 공익감사단 · 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민생호민관 · 前 국회사무처 보좌관(4급 상당)
2	조광현 (남)	61세	· 행정사 · 前 마포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 前 마포구 법무팀장, 민원소통팀장
3	황성호 (남)	55세	· 건축사 · 한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前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동 위촉 동의안은 2014. 4. 24.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3명을 위촉하고 마포구의회 동의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2022. 10. 14. ~ 10. 28.까지 마포구 ombudsman을 공개모집한 결과 7명이 지원하여 2022. 11. 4.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심사 결과 3명의 ombudsman이 선정되었으며 선정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ombudsman 위촉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자치단체장의 임의적·편파적인 ombudsman 선정을 예방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객관적 판단을 하여 행정절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전문성을 고려한 ombudsman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기 ombudsman이 4년여 동안 500여 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각하, 소송취하 등 한정적 시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을 감안할 때,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축적된 경험 등이 누락없이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하여 3기 ombudsman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처음으로

#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1. 18.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1. 2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 가. 제안이유

마포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출연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

2) 출연의 필요성(사업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마포구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출연금: 10억원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

재단 출연(出捐)에 대하여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지방재정법」 제 18조제3항1)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음.

- 신용보증재단 출연의 목적은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이들의 운영자금 용자시 은행에 대한 신용보증 재원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 지원한도를 결정하고 대위 변제 충당을 위한 지불준비금으로 사용하게 됨.
- 마포구 출연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총 26억원이며 2020년도에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의 막대한 영업피해에 따른 운영자금의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에 기인하며, 2023년도 출연금으로 제출된 10억 원 역시 동일한 사유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단위: 억원)

2005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20년	합계
2	2	2	2	2	16	26

-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동 출연(안)은 법령에 명시한 절차에 위배됨이 없고 출연의 목적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출연에 따른 특별보증의 대상, 보증 조건 및 지원우대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련부서 설명을 요한다 할 것임.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 관계 법령 】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17>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豫受金) 및 용자상환금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04.11.20, 개정 2011.3.17)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04.11.20, 개정 2011.3.17)

 처음으로

#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1. 18.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1. 30.)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출연대상: (재)마포문화재단

2) 출연의 필요성

-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
- 마포지역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3) 출연금 결정: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 후 2023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결정.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재)마포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出捐)에 대하여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2)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음.
- 출연대상인 (재)마포문화재단은 2007년 마포구의 출연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연, 전시, 축제 사업, 문화돌봄 예술치유 사업, 구민 문화예술교육, 생활체육 진흥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출연목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정책의 개발·시행,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재단 운영을 지원하여 마포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출연의 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마포문화재단의 운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마포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이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고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계획에 제출된 출연금(5,948,186천 원)은 별도의 예산안 심의시 문화재단의 그간의 운영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을 후 확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 2)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관 계 법 령 】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처음으로](#)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1. 18.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1. 30.)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박춘주】

### 가. 제안이유

마포구 성산동에 건립중인 쌍둥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변경 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사업명: 쌍둥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 계획
- 2)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00-335
- 3) 사업규모

구분	항목	층수	면적(m <sup>2</sup> )	세부 시설용도
취득 (당초)	건물 신축	지하1층	814	주차장 25면
취득 (변경)	건물 신축	합 계	998.7	
		지상층	33.16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지하1층	816.00	주차장 25면(일반11, 확장9, 경형4, 장애인1)
		지하2층	149.54	기계실 등

4) 계획변경 사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5) 소요예산: 4,282백만원 <시비 19% / 구비(주차장특별회계) 81% >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2,425	808	-	1,617	-
<b>변경</b>	<b>4,282</b>	<b>896</b>	<b>-</b>	<b>2,335</b>	<b>1,051</b>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었기에 변경 계획을 수립, 다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사업내용 및 계획변경 사유

- 취득 1건: 쌍둥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 계획안

- 사업내용: 마포구 성산동 200-335 쌍둥이어린이공원의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공원 일대 주택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 지하층에 공영 주차장 건립.

- 변경계획안 제출 사유: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2,425,000천 원 이던 사업비가 2022년 실시설계 이후 4,281,719천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증액비율은 76.6 퍼센트에 달함<sup>3)</sup>.

○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유를 항목별로 보면, 공사비에서 물가상승분 현실화, 승강기 설치, 지하2층 기계실 추가, 그리고 고용지원개선비 공사원가를 반영한 결과이고, 용역비 항목에서는 도시계획 중복결정 용역비, 설계의도 구현 용역비, BF(barrier-free)<sup>4)</sup> 예비인증 수행용역비가 추가되었으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배리어 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

감리비 항목은 기본계획에 없던 건축사법 감리 용역비와 소방, 전기 감리 용역비가 새로 편성되었음.

- 이와 같은 증액사유는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용편익을 고려한 승강기 설치비의 추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임. 그러나 그 중에서 도시계획 중복결정 용역비, BF 예비인증 용역비, 공사 감리비 등은 2020년 기본계획 수립시 또는 2021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시 계상되었어야 함.
- 또한, 구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의회에 제출되는 관리계획 내용 중 총 사업비의 규모는 심의 의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바, 사업비의 76.6 퍼센트 큰 폭으로 증액된 본 변경 계획안을 보건데 물가인상 등 부득이한 경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2021년 구의회에 제출된 관리계획안의 심의자료가 부실했음이 인정됨.
- 그러므로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당초 기본계획안 입안에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노력이 요구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와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특히 2022회계연도 내 예산의 집행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8. 기타: 없음

 처음으로

---

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한다. 영문을 직역하자면 장벽(barrier)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의미.

#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1. 18.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1. 30.)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징수과장 류필상】

### 가.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  
또는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고,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이 동의안을 제출함.

### 나. 주요내용

1)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2) 출연의 필요성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금 출연

3) 출연금: 20,212천원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出捐)에 대하여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5)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음.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출연금의 결정은 전전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발전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이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 8. 기 타: 없 음

---

#### 5)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관 계 법 령 】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

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1. 18.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 가. 제안이유

동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 2)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수립·시행 의무조항 내용 변경

#### 3)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용어 변경)

#### 4) 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 및 관련 조항 삭제

#### 5)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른 조문 정비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 전부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능정보사회의 기본원칙 규정 (안 제1조 ~제3조)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안 제5조~제8조)
    -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안 제10조)
    - 구민 정보화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안 규정(안 제11조~12조)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4조~제15조)
- 조례 체계를 살펴보면 현행 48개의 조문 중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여 15개의 조문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조례에서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각각의 관련법으로 대체하여 간결하게 정비하고 있음은 자치법규 입법의 좋은 사례로 보임.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지능정보사회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분야별 지능 정보화의 추진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시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부서간 사전 협의

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하고 그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9조), 현대 디지털 사회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사회 구성원간,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음(안 제10조)
- 그 밖에 현행 제6장 정보화교육 및 제7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이 구민 정보화 교육과 수강료의 징수(안 제11조~제13조) 및 구 홈페이지 운영 관련 조문(안 제 제14조~제15조)으로 개정되었으며 검토 결과 이 조례 전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지능정보 과의존에 따른 부작용과 그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계부서의 설명을 요한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1. 18.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 가. 제안이유

동 조례의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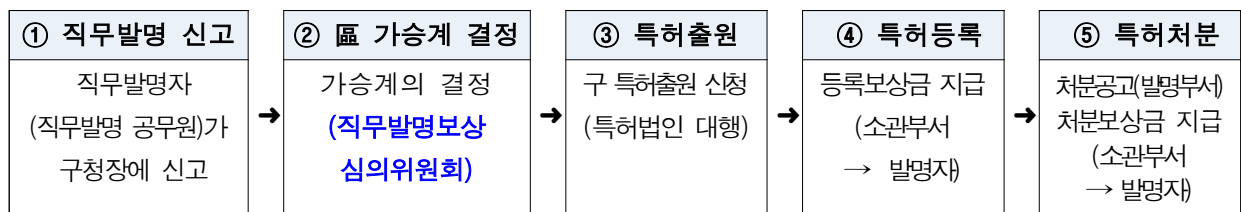
### 나. 주요내용

- 1)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위원 구성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2)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디지털재정과장” ⇒ “새마포담당관”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안 제21조), 위원회 간사를 ‘디지털재정과장’에서 ‘새마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임(안 제25조)
- 안 제21조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은 자치법규 성별영향 평가를 반영하여 성비(性比)를 균형 있게 위촉함으로써 직무발명 심의시 양성의 의견이 고르게 개진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25조는 이 조례 소관부서의 변경에 의한 개정임.
- 한편, 최근 5년간 마포구의 직무발명 보상 현황을 보면 2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직무발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저조한 결과임.
- 직무발명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의혁신 제도와의 연관되는 사업으로 직무발명과 창의 혁신으로 구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 절차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직무발명 관련 직원 교육과 홍보 활동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직무발명 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전 직원에게 공유되어서 정당한 직무발명 제안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직무발명(특허, 실용신안) 업무 절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 8. 기 타: 없 음

## 【 관 계 법 령 】

### □ 직무발명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1. 18.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박춘주】

### 가. 제안이유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정비(안 제3조의2)
- 2)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에 대한 공개규정의 보완(안 제5조)
- 3)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안 제10조)
- 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4조 등)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신설하고 기타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의 “법” 제16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는 등 각 호를 알맞게 정비하고 있고(안 제3조의2),
  - 같은 법 제92조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문을 어법에 맞게 개정하고 특히, 현행 조례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 증감 현황 등의 공개방법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안 제 5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임.
  - 또한, 조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였는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조문을 추가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으로 보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미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령 단순 재기재로 판단하여 삭제하려는 것임. 그리고 제5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던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한데 따르는 것임.(다만, 제출된 개정안의 기준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 명시한 기준과 동일함)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삭제·추가하고 있어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8. 기타: 없음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조례 제3조의2(심의회의 기능)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1.]
<p><b>제16조(공유재산심의회)</b></p> <p>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li> <li>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하는 경우</li> <li>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li> <li>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li> </ol>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b>제16조(공유재산심의회)</b></p> <p>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u></li> <li>2. <u>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u></li> <li>3. <u>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u></li> <li>4. <u>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하는 경우</u></li> <li>5. <u>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u></li> <li>6. <u>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u></li> </ol>

□ 조례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1.]
<p><b>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b>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b>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b>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p>

□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1.]
<p><b>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b>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p>	<p><b>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b>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u>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li> <li>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li> <li>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li> <li>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li> </ol>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p>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 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55호, 2022. 2. 18.,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시행 2023. 1. 1.]
<p><b>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p><b>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u></p> <p>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u></p>

□ 조례 제14조 외 사용·수익허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1.]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7. “<u>사용·수익허가</u>”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7. “<u>사용허가</u>”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p>

□ 조례 제70조, 제91조 관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81호, 2019. 8. 20., 일부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일부개정]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b>감정평가업자</b>”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b>감정평가법인등</b>”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p><b>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b>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b>감정평가업자</b>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p>	<p><b>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b>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b>감정평가법인등</b>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p>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1. 18.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재산세과장 윤민선】

### 가. 제안이유

구세 자동이체 납부 신청 및 전자고지 이용자의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구세 감면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규정 삭제(안 제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경감률 직접 규정

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안 제14조의2)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 250원 ⇒ **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600원 ⇒ **1,600원**

3) 부칙 개정을 통한 적용시한 연장(안 부칙<조례 제1278호, 2019.12.26.> 제3조)

- 2022년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규정의 적용 시한을 3년 연장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은 구세 징수의 편의 도모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구세 자동이체 납부 및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그 밖에 구세 감면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삭제(안 제2조)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해당 경감률을 조례에 위임하던 규정이 2021년부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임.(경감률은 동일하므로 동 조항의 삭제는 무방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있고(안 제14조의2),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 있음.

<개정 전,후 비교 표>

신청 구분	세액공제액		마일리지 적립액		공제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전자송달or 자동이체	250	800	350 *(850)	0(폐지)	250 ~ 800
전자송달& 자동이체	600	1,600	500	0(폐지)	500 ~ 1,600

- 개정안의 세액공제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sup>6)</sup>내의

6)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금액이며 고지율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25개 자치구 공동 개정사항임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급되는 마일리지는 중복지원 논란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리고 부칙 제3조의 개정은 이 조례의 효력 적용시한인 2022년 12월 31일이 도래하여 그 기한을 다시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한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에 의한 납부신청자 증가추세(정기분 등록면허세에 한함)를 보면 2019년 7,255건 / 2020년 10,249건 / 2021년 12,778건 / 2022년 15,4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지율 및 징수율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납부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요한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

## 【 관 계 법 령 】

### □ 지방세특례제한법('19.1.1.시행, 법률 제16041호로 '18.12.24.일부개정된 것)

####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생략)

### □ 지방세특례제한법('22.1.1.시행, 법률 제18656호로 '21.12.28.일부개정된 것)

####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 12. 28.>

⑤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22.7.5.시행, 법률 제18682호로 ‘22.1.4.타법개정된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 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이하 생략)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1.3.25.시행, 서울특별시조례 제7955호로 ‘21.3.25.타법 개정된 것)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개인 납세자(전자고지를 받는 납세자로서 서면고지와 병행하여 고지받는 납세자는 제외한다)가 서울특별시세 등 정기분 세목을 전자고지로 받아 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한 때에 전자납세자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전자적인 방법”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간 자동 계좌이체제도, 무인공과금 수납기, 금융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납세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납부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mileage)를 개인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별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적립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350원.

2.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850원. 다만, 자동이체자는 납부건당 500원.

④ 적립된 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충전
2. 서울역사박물관 또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무료입장 교환권 발권(특별전시는 제외한다)
3. 지방세 등 납부할 세액의 차감
4.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5. 배우자,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양도
6.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대체
7. 전자납세자가 신청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무료입장 교환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3항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22. 남해석 의원 외 12인
- 나. 회부일자: 2022. 11. 25.
-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8.)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남해석 의원】

### 가. 제안이유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품권의 구매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관리 현황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2) 이자수익 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 3)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1월 22일 남해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은 갈수록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는<sup>7)</sup> 지역 사랑 상품권 운영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운영·관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상품권의 구매·이용시 장애인, 노년층 등 정보취약계층<sup>8)</sup>이 차별받지 않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있음.
-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3조의2에 2항을 신설하여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올해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개정된 조례에는 운영자금을 구 금고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자금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나 운영 현황 공개 부분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음.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포함토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임.
- 또한, 제3조의3을 신설하여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재정으로 귀속함을 명시함.
- 그리고, 상품권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으며(안 제7조의2), 이는 그동안 장애인, 노년층 등이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의 구매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sup>9)</sup>에서도 각종 정보 접근에

7) 2021년 7월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서울시 주관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40.6%), 소상공인 보호(21.2%), 가계지출부담 완화(20.1%), 전통시장 활성화(16.5%)에 유용하다고 응답하여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음.

8) 정보취약계층: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노년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sup>10)</sup>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이러한 조례의 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보취약계층 또는 디지털 약자가 손쉽게 마포사랑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마포사랑상품권 발행규모 및 예산

발행년도	발행규모 (억원)	발행회차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660	11회	18,053,084	2,765,198	9,937,886	5,350,000
2020년	300	4회	3,418,729	0	2,068,729	1,350,000
2021년	500	4회	5,362,355	1,197,198	3,165,157	1,000,000
2022년	860	3회	9,272,000	1,568,000	4,704,000	3,000,000

- 사업 추진 비용 및 마포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지급
- 2022년 현재 할인보전금 매칭 비율 (국비:시비:구비=2:6:2)
- 2022년부터 마포사랑 상품권 발행수수료 자치구 부담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22. 김영미 의원 외 9인
- 나. 회부일자: 2022. 11. 25.
-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8.)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신종갑 의원】

### 가. 제안이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의 고객 금지행위와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새롭게 규정하여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감정노동 종사자의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안 제2조)
- 2) 고객의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 신설(안 제12조)
- 3) 금지행위가 발생할 경우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3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1월 22일 김영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이 조례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감정노동<sup>11)</sup> 종사자의 보호대상에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밖에 반복적인 민원제기,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조항을 추가하여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기존 조례의 감정노동 종사자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2조), 고객이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안 제12조), 이러한 금지행위가 발생할 경우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안 제13조)
- 그리고 안 제14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에서는 권리보장위원회의 성격이 실행기관은 아니므로 제2항 제1호중 ‘시행’을 ‘자문’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살펴본 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감정노동 종사자 범위에 공무원을 추가하고, 고객의 금지행위를 열거함은 물론 감정노동 사용자로 하여금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판단됨.
- 한편, 감정노동 종사자는 근로자이고 공무원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

11)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으로, 이러한 직종 종사자를 감정노동 종사자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활동이 직무의 50%를 넘을 경우를 감정노동에 해당한다고 본다.

있는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존재 하지만 법률 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향후 조례 해석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공공 영역의 근무자에게는 친절과 봉사 등 서비스의 기대치가 높아 더 많은 감정노동이 요구되므로 조례에 그 대상을 추가로 명기하여 보호대상임을 강조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관 계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89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22. 고병준 의원 외 8인

나. 회부일자: 2022. 11. 25.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8.)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고병준 의원】

### 가. 제안이유

거리예술 및 거리예술가의 정의를 규정하여, 거리예술가들의 참여 확대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거리예술”에 문학과 전시를 포함함(안 제2조)
- 2) “거리예술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1월 22일 고병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 취지는 ‘거리예술’ 분야에 문학과 전시를 포함하고 거리예술가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우리 구 거리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동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고 하여 <문학> 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에 <전시> 역시 문화사업의 한 분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리예술의 범위에 이 분야를 추가하고, 거리예술가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우리 구 거리예술 분야의 발전을 꾀하려는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 목적에도 부합함.
- 마포구 거리예술 현황을 보면 오래 전부터 홍대 인근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구에서도 2019년 거리예술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 홍대 걷고싶은 거리 운영 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1.~10.
승인건수	7,971	1,719	15	1,661
유 형	버스킹(음악, 댄스 등), 문화예술행사, 공공캠페인, 방송촬영 등		(비대면)문화예술행사, 전시, 방송촬영 등	버스킹(음악, 댄스 등), 문화예술행사 등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공연장 운영 중단(2020.11. ~ 2022. 3.),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버스킹존 2개 구역 운영 재개(2022. 4. ~ 11.)

- 다만, 현재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장소 사용승인, 질서 유지 등이어서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예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임.
- 거리 예술을 포함한 각종 공연·전시 활동의 장려는 홍대 관광특구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예술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적인 방안 마련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문화예술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은 형식과 방법에서 차이가 날 뿐 전문지식이나 예술적 재능을 가진 직업인이자 노동자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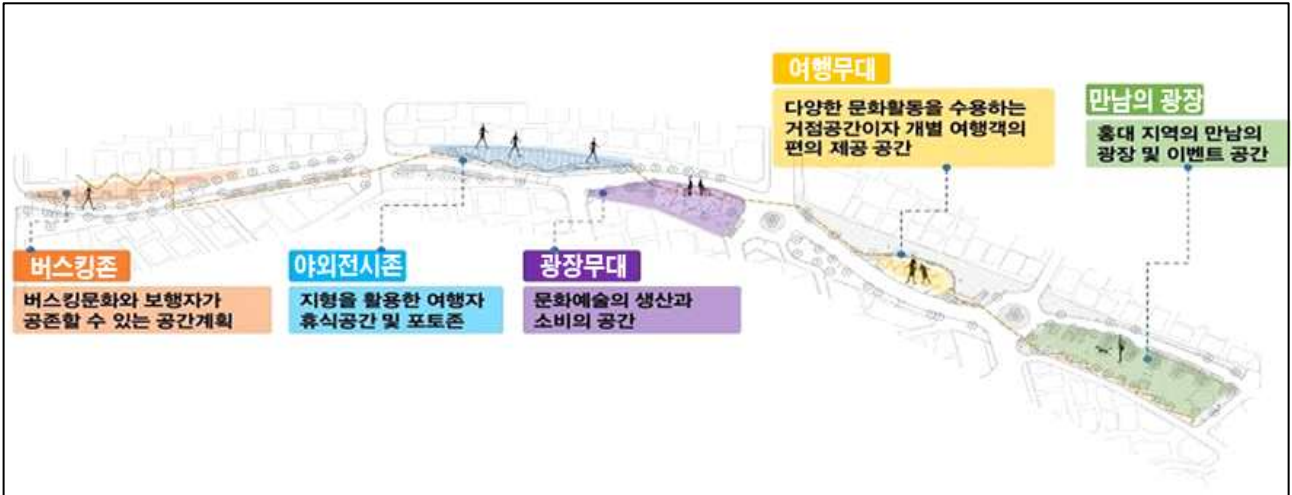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참고자료 1】

### □ 홍대 걷고싶은거리 현황

- 위 치 : 마포구 어울마당로 107~155-1
- 규 모 : 5개 구역 / [폭] 15~45m, [길이] 500m
- 구역현황 및 위치도



버스킹존	야외전시존	광장무대	여행무대	만남의 광장
버스킹존 3개존 (거리공연)	문화·예술행사, 공공캠페인, 공익 관련 행사 등			

## 【참고자료 2】

#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69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6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 10. 16.>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개정 2018. 10. 16.>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 12. 30., 2018. 10. 1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9. 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9. 13.

다. 상정일자: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9. 27.)

상정, 심사, 보류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8.)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 가. 제안이유

마포구립예술합창단 조례 규정중 지휘자 및 반주자의 연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 나. 주요내용

- 1) 구립예술합창단의 정원 규정 개정(안 제5조)
- 2) 지휘자 및 반주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3) 동 조례 시행규칙의 삭제(안 제14조)
- 4)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 연임에 관한 적용례 규정 신설  
(부칙 제2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안은 구립예술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의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문맥에 따라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 먼저 **안 제3조(운영) 제1항**, **안 제7조(단원 등의 자격) 제1항제2호**, **제3항**, **안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4항** 등은 각각의 조문내용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어순을 자연스럽게 하는 등 그 뜻이 간결하고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비하고 있으며, 살펴보건대 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구성)제3항**에서는 현 조례에 구립예술합창단 정원을 6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이 규정의 취지와 현재의 합창단 운영 현황을 보건대 합창단별 정원이 각각 60명 이내로 표기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이에 따라 미비한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고 있음.
- **안 제8조(위촉)**는 제2항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에 없는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휘자 및 반주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기 연임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같이 개정 조문을 살펴보면 특별히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알맞은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안제8조 제3항**에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다’고 하는 문장은 생략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개정안 제7조 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례 제10조제3항**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를



‘수탁자는 구에서’로 수정이 필요할 것임.

- 그 밖에, 지휘자 및 반주자와 관련된 조례의 규정과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 중 입법원칙에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단원 등의 자격) 제2항**에는 지휘자와 반주자의 자격요건으로 ‘음악 전공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반주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시행규칙 제8조12)에서는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 반주자 역시 4년제 대학 이상’으로 명시하여 응시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 규칙의 규정 범위는 조례의 위임 범위에서 정해야 함에도 지휘자 또는 반주자의 자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의 위임 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이 남용될 우려가 있고,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그리고,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휘와 반주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를 ‘**4년제 대학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각종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학력차별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서 규칙 개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와 관련, 구립 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17개 자치단체로 파악되며 그 중에서 지휘자 등의 모집 요강에 “4년제 대학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곳은 마포구, 동대문구, 용산구 등 3곳에 불과함.

---

12) 제8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구립예술합창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9.>

1.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등 악기연주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음악반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22.09. 기준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포함 총 14곳)〉

연번	지역	조례명	단원의 모집 관련 조항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b>제3조(단원의 모집)</b> 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정기모집을 하되, 필요시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합창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4)
2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b>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b> ① 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2.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합창단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안무자는 무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안무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b>제6조(자격)</b> 합창단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사람 중에서 모집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트레이너 등의 전문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합창단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반주자와 트레이너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b>제4조(위촉)</b>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10. 5> 1.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여 음악에 조예가 깊고 합창단 지휘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2. 반주자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능력있는 자중 지휘자 의견을 참고한다. 3. 단원은 실기 및 면접으로 공개전형을 거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으로 할 수 있다
5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합창단 설치·운영조례	<b>제5조(단원의 자격 기준 및 선발)</b> ① 여성합창단원은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7.9.21, 2019.5.17.> ② 청소년합창단원은 초·중·고교 재학생 중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5.2.27, 2019.5.17.> ③ 청춘실버합창단원은 56세 이상의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7.9.21, 2019.5.17.> ④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우는 거주지역과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17.9.21.> ⑤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 전형을

연번	지역	조례명	단원의 모집 관련 조항
			<p>거쳐 선발할 수 있다. &lt;개정 2017.9.21.&gt;</p> <p>⑥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7.9.21.&gt;</p> <p>⑦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lt;개정 2017.9.21.&gt;</p> <p>⑧ 단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아니하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lt;신설 2019.5.17.&gt;</p>
6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6조(단원의 자격)</b></p> <p>①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균등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동대문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거주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p> <p>②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p> <p>③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음악 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고 지휘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p>
7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4조(자격)</b></p> <p>① 단원은 동대문구 거주자로 한다. 단,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② <b>지휘자는 4년제 정규대학 음악전공자로 하고,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b></p> <p>③ 반주자는 여성으로서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고 지휘자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p>
8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p><b>제6조(단원의 자격)</b></p> <p>① 합창단 단원은 구 지역 안에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만19세 이상으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lt;개정 2009.12.30, 2011.6.9, 2016.9.22&gt;</p> <p>② 소년소녀합창단은 구 거주 만7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또는 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lt;신설 2016.9.22&gt;</p> <p>③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lt;신설 2011.6.9&gt; &lt;개정 2016.9.22&gt;</p> <p>④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lt;신설 2011.6.9&gt; &lt;개정 2016.9.22&gt;</p>
9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p><b>제8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b></p> <p>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구립예술합창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20.7.9, 2022.9.15&gt;</p> <p><b>1.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b>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lt;개정 2022.9.15.&gt;</p> <p><b>2.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b>에서 피아노 등 악기연주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음악반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lt;개정 2022.9.15.&gt;</p> <p>3. 지휘자 및 반주자를 제외한 합창단 및 실버합창단의 단원은 음악을 전공했거나 성악에 조예가 깊은 자,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p>

연번	지역	조례명	단원의 모집 관련 조항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7.30] <개정 2020.7.9, 2022.9.15.>
10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b>제6조(단원의 모집)</b> ① 단원을 신규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이전에 구보 또는 일간신문,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 경력 기재) 1부 3.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 (단, 최종합격자에 한함)
11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b>제3조(자격)</b> ① 단원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하며 신규단원은 만25세 이상 50세 이하의 자 중에서 모집한다. 단 성악전공자나 성악에 탁월한 소질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단장은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반주자는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12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b>제5조(지휘자 등의 선발)</b> ① 지휘자, 반주자는 사회적 지명도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전형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단장, 지휘자가 한다.[제목개정 2014.7.10.][중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4.7.10.>]
13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b>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b>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b>1.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b> 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b>2.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b> 에서 피아노 등 악기연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음악반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b>3. 단무장은 4년제 대학 이상</b> 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성악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을 제외한 합창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자로 한다.
14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b>제5조(전형)</b> ① 단원은 전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위촉하며

연번	지역	조례명	단원의 모집 관련 조항
			<p>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휘자 및 반주자는 능력·경력 및 사회적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단장이 서류심사 방법으로 전형한다.</li> <li>2. 지휘자·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체육과장이 한다.</li> </ol>
15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p><b>제4조(자격)</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단원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원 1/3 범위 내의 단원과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3. 6.20)</li> <li>②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li> <li>③ 반주자는 여성으로서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2. 5.18)</li> <li>④ 단원은 여성으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2. 5.18)</li> </ol>
16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p><b>제6조(자격기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여성합창단은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li> <li>② 소년소녀합창단은 8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된 단원은 전출, 전학 등의 사유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남은 위촉기간 동안 단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li> <li>③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무장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거주지 자격제한은 두지 않는다.</li> </ol>
17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p><b>제3조(단원의 선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휘자와 사무장은 면접심사 방법으로 전형하고 반주자 및 나머지 단원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li> <li>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제출자에게는 사전심사 후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li> </ol>

**【 대한민국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1. 18.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8.)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 가. 제안이유

동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의 지원 규정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11조)
- 2) 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 변경(안 제13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의규정인 마포구 체육회와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지원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며(안 제11조), 보조금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자 함. (안 제13조)
- 이 조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2022년 2월 3일 개정되어 8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규정을 기존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음. 이러한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회 등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함은 물론, 지방체육회의 역할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 이러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동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개정안 제13조 역시 인용 조례의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법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반면, 이와 같이 지방체육회의 활동이 공익적 중요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체육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또한 강화되어야 하므로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세밀한 지도·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체육분야 통계<sup>13)</sup>에 의하면 성폭력, 폭행, 인권 침해 등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체육계의 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조항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지난 2년간 체육계 성폭력, 폭행 등 범죄행위로 체육지도자 2,240명의 자격을 취소 처분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기타 등이라고 발표 (2021년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

〈수정안 예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건강한 체력 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p>	<p>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건강한 체력 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 이에 덧붙여, 성폭력 대책 등에 대한 여성 체육인의 의견을 체육진흥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집행기관은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시 많은 여성 체육인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아울러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동 협의회에 체육 관련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안 첨부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2-110관련
----------	----------

발의년월일 : 2022. 12. .

발 의 자 : 행정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체육계의 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제목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을 “(구청장의 책무)”로 수정함.

나.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② 구청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 제목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생 략) <u>&lt;신 설&gt;</u></p>	<p>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u>구청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 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부터 선 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22. 신종갑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2022. 11. 25.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신종갑 의원】

### 가. 제안이유

마포구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실효성 없는 협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안 제4조)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 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하여 마포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구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의 제휴 및 협약이 이뤄지는지 현재 구민과 구의회가 알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제정안을 통해 마포구청은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제휴와 협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체결 후 이를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에 보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 (안 제4조)에 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 (안 제5조)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으로는
  - 본 제정안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업무제휴나 협약 관련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예산이 수반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보고 후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22. 홍지광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2022. 11. 25.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홍지광 의원】

### 가. 제안이유

마포구 구정 홍보 및 행사 등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게시물 제작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이전보다 지원의 폭을 넓히고, “마포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를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 정비(안 제5조)
-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사항 신설(안 제6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홍지광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마포구 구정 홍보 및 행사 등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게시물 제작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이전보다 지원의 폭을 넓히고, “마포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를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 정비함.
- (안 제6조)에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사항 신설함.
-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마포구 소셜미디어 운영 채널은 ① 페이스 북 ② 블로그 ③ 인스타그램 ④ 카카오톡 채널 ⑤ 트위터 ⑥ 카카오톡 채널 총 6개 운영 중으로 SNS의 채널 특성을 고려하여 양방향 소통체계를 확립하여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개선,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구청과 구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마포구 SNS 서포터스’를 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뿐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SNS 서포터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신규 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령층이 고령층에 한정된 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연령과 세대가 구정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규정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본 조례안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22. 채우진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2. 11. 25.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홍지광 의원】

### 가. 제안이유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강습) 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 범위를 확대·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시간 범위(〔별표1〕 제20호가목)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채우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강습)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

범위를 확대·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제20호가 목 중 “2시간”을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관장하는 체육관 사용에 따른 수강회원이 프로그램 이용시간과 무료주차 시간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하여 최대한 3시간으로 변경하여 체육관 사용자의 이용 활성화 및 구민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규정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개정전)

관련 주차요금 내용: 제20호 가목
20.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 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한다) 이용자 등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 한다. 단, 학교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 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수강 시마다 2시간 이내 면제
나.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정기권 50% 할인 (단, 중복할인 불가)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개정후)

### 관련 주차요금 내용: 제20호 가목

20.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 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한다) 이용자 등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 한다. 단, 학교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 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시간 이내 면제

나.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정기권 50% 할인  
(단, 중복할인 불가)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22. 장정희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2022. 11. 25.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고병준 의원】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2022. 7. 7. 공포·시행)에 따라 동  
규칙을 준용하는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대상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4개 (변경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

## 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2022. 7. 7. 공포·시행)에 따라 동 규칙을 준용하는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건의 조례에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정비하는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1. 18.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 가. 제안이유

2022년 12월 31일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유지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변경(안 제7조)
  -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하는 내용 추가(안 제10조)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국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수시개정을 줄이기 위해 내용 수정(안 제10조)

- 행정지원국장, 남북 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 →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조항 삭제(안 제17조, 안 제18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2년 12월 31일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유지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변경
  -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안 제10조)에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하는 내용 추가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안 제10조)에 국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수시개정을 줄이기 위해 내용 수정
  - 행정지원국장, 남북 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 →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
- (안 제17조, 안 제18조)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조항 삭제
-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하고 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통일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으로 당장은 외부환경적 이유로 경색되어 활용처가 미비 할 수 있으나 마포구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기금이 되도록 기금정립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1. 18.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 가. 제안이유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변경,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복장 및 제복 개정(안 제12조제3항)
  -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준용 법령 등 변경
- 특별휴가 일부조항 삭제 및 개정(안 제24조)
  -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3항과 중복되어 삭제(제9항)
  -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제13항)

- 기타 관계 법령 폐지 및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비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변경,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제3항)에 복장 및 제복 개정에 따른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준용 법령 등 변경하는 내용임.
- (안 제24조)에 특별휴가 일부조항 삭제 및 개정하는 내용임.
  -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3항과 중복되어 (제9항)을 삭제
  - (제13항)에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
- 기타 관계 법령 폐지 및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장기 재직휴가 대상 확대,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변경,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불필요 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직원 장기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세분한 것에 대해 휴가를 사용 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1. 18.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 가. 제안이유

「주민투표법」 개정(2022. 4. 26. 공포)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및 제8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및 제10조)
-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 8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및 제13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민투표법」 개정(2022. 4. 26. 공포)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8조)에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안 제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안 제4조)에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안 제8조 및 제10조)에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 (안 제 8조)에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처음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1. 18.

다. 상정일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9.)

상정, 심사, 보류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12. 1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 가. 제안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3.1.1.)에 대비하여 기부금 모금 및 운용과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6조)
- 지정금융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20조)
-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22조)
- 시행일 및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부칙 안 제1조~제2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3.1.1.)에 대비하여 기부금 모금 및 운용과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을 정의함.
- (안 제2조 ~ 제6조)에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에 지정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제10조)에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 제20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21조 ~ 제22조)에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 (부칙 안 제1조~제2조)에 시행일 및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답례품의 종류)제1항 답례품 제공과 제3항에 답례품을 우선

선정 내용중 마포구 현실에 맞는 답례품 조항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기부자의 감사표시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선정시부터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되어 고향사랑 기부자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좋은 답례품 선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변 호	22-130 관련
------------	-----------

발의년월일 : 2022. 12. 19.

발 의 자 : 행정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의 제공·우선 선정에 대하여 우리구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내용

가.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

2. 특산품 또는 기념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의원

4.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제3조제1항 중 “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

이 구 내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및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0호) 중 “물품”을 “물품 및 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1. 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3. 구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서비스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
2. 특산품 또는 기념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4.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1항 중 “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구 내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및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

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0호) 중 “물품”을 “물품 및 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1. 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3. 구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서비스 등

##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p> <p>② <u>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u>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u></p> <p>④ <u>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u></p>	<p>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u></p> <p>1. <u>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u></p> <p>2. <u>특산품 또는 기념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3. <u>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u></p> <p>4. <u>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u></p> <p>5. <u>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u></p> <p>&lt;삭제&gt;</p> <p>&lt;삭제&gt;</p>



장이 위촉한다.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  
이 풍부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  
원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  
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상품·유통에 전문  
적 지식을 갖춘 사람 등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

⑤·⑥ (생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  
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생  
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  
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  
인 또는 기업이 구 내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  
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  
기 위하여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③·④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  
-----  
-----  
----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및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등-----  
-----  
-----  
-----.

<삭 제>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신 설>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② -----  
-----  
-----  
-----.

1. 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삭 제>

<삭 제>

3. 구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및 공예품

<삭 제>

<삭 제>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삭 제>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삭 제>

8. 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 브랜드 사용 품목

<삭 제>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삭 제>

10.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2. -----  
-----  
-----물품 및 서비스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삭 제>

12. (생략)

4. (현행 제12호와 같음)

<신 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서비스 등

13. 기타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삭 제>

 처음으로